#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 협약서

## [총괄주관기관⇔대표주관기관⇔주관기관]

○세부사업명: F2 (Non-PFC) Gas Chamber Cleaning 기술 개발

○총 사업기간: 2003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(36개월)

○총 사업비(단위:처원)

o hi kan aa							
구 분		1차 년도 (2003.7-2004.6)	2차 년도 (2004.7-2005.6)	3차 년도 (2005.7-2006.6)	합 계		
정부출연금		1,340,000 천원	1,120,000 천원	865,000 천원	3,325,000 천원		
민 간부담금	현 금	260,000 천원	216,000 천원	165,000 천원	641,000 천원		
	현 물	1,040,000 천원	864,000 천원	660,000 천원	2,564,000 천원		
	소 계	1,300,000 천원	1,080,000 천원	825,000 천원	3,205,000 천원		
합계		2,640,000 천원	2,200,000 천원	1,690,000 천원	6,530,000 천원		

○대표주관책임자 : 소속 (주)삼성전자 직위 부장 성명 홍기수

o 협약당사자

(갑) 총괄주관기관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덕영

(을) 대표주관기관장 삼성전자(주) 대표이사 부회장 윤종용

(병) 주관기관장: (병1) (주)아토 대표이사 사장 문상영

(병2) 코아텍주식회사 대표 문영환

(병3)

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 수행에 관하여 (갑), (을) 및 (병)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사업목표 및 내용)

별첨1의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계획서상의 기술사업 목표 및 내용과 동일

## 제2조(기술사업의 수행)

(을)은 주관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세부사업을 별첨1의 청정생산기술사업 (중대 형과제)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3조(사업비의 지급)

(1) (갑)은 (을)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(갑)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#### (가) 정부출연금

차수	현금(단위:천원)	비고
1 차 2 차		※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
3 차		당해연도별 분할지급

#### (나) 민간부담금

차수	지급시일	사업비(천원)		
71	/ 1 년 / 1 년	현금	현물	계
1 차	20 년 월 일			
2 차	20 년 월 일			
3 차	20 년 월 일			

(2) (을)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청정생산기술사업 운영요령 및 지침(이하 "운영요령 및 지침" 이라 한다)의 제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## 제4조(기술사업 결과보고)

- (1) (을)은 운영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부사업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보고서(20부)를 연차별개발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, 최종보고서(20부)는 개발사 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(초록부분 디스켓제출)에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 여 (갑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(2) (을)은 최종보고서를 운영요령 및 지침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참여기업 대표의 사업성과 확약서 및 평가의견서와 함께 (갑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(3) (을)은 (갑)이 요구하는 경우 대표주관책임자로 하여금 기술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5조(관계자료의 제출 등)

(을)과 (병)은 (갑) 또는 (갑)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사업현장 확인, 관계서류의 열람,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대표주관책임자, 주관기관책임자 또는 위 탁기관의 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 제6조(협약의 변경)

(갑)과 (을) 및 (병)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청정 생산기술사업 (중대형과제)세부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운영요령 및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협약변경으로 보지 않는다.

#### 제7조(협약의 해약)

- (1) (갑)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  - (가)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 등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세부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(나) 운영요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토 등에 의해 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
  - (다)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세부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
  - (라) 산업환경정책 수행상 세부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(마)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부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
  - (바) 기술개발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(2)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(을)은 기수령한 정부출연금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(갑)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의 잔액은 (갑)이 환수하고 민간부담금의 잔액은 (을) 과 (병)이 협의하여 처리한다. 다만, (갑)은 운영요령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불성실수행평가를 받은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전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(을)과 (병)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.

## 제8조(사업성과의 귀속 등)

지적재산권, 유형적 발생품, 시작품, 보고서 판권 등 본 세부사업의 성과는 (을) 또는 (병)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, 시작품과 연구기자재 및 설비는 정액기술료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. 다만, (을) 또는 (병)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납부하고 실시권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실시권을 양도하여야 한다.

## 제9조(사업성과의 활용)

- (1) (을)은 운영요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성공으로 평가받은 경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이를 (병)과 참여기업에게 알리고 실시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를 개시하여 운영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(2)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(을)또는 (병)은 제3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- (3)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 (을)또는 (병)은 실시계약에 따라 정액기술료(정부출연금
- 의 %)를 징수하여야 한다. 이 때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납부예정 기간보다 조기 납부하는 경우 운영요령 및 지침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(4) 실시기업이 실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(을) 또는 (병)은 다른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(5) (을)또는 (병)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, 실시계약이 성실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 본 사업의 성과는 (갑)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활용할 수 있으며 (을)또는 (병)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수 있다.

## 제10조(기술료의 징수 등)

- (1) (을) 또는 (병)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정액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현금 또는 총괄 주관기관의 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실시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은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동안 균등 분할하는 것이어야 한다.
- (2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(을)과 (병)은 운영요령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한 기술료 징수계획서와 약속 어음을 작성하여 (갑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(3) (병)은 동사업결과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 (1)항의 정액기술료 이외의 경상기술료를 (을)과 (병)의 별도 계약에 따라 (을)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## 제11조(관계법령의 준수)

(갑)과 (을) 및 (병)은 본 기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 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, 운영요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, 본 협약 에 없는 사항도 이에 따라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제12조(기타)

- (1) (갑)과 (을) 및 (병)은 본 기술사업 결과를 공개할 경우 청정생산기술사업의 결과 임을 밝혀야 한다.
- (2)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운영요령 및 지침의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.
- (3) 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(갑), (을) 및 (병)에게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 제13조(해석)

(1) 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.

- (2)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(갑), (을), (병)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- (3) (을) 또는 (병)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대표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기술사업을 수행하되 운영요령 제11조의 2 및 제11조 규정 등에 따른 법적인 권한과 의무는 (을) 및 (병)이 이행한다.
- 첨부 1. 청정생산기술사업 (중대형과제)사업계획서 원본 2부.
  - 2.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 현물출연 확약서 1 부.
  - 3. 대표주관기관과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계약서 사본 각 1부
  - 4. 청정생산기술사업 세부사업 위탁사업계약서 및 계획서 사본 각 1 부.
  - 5. 참여기업 현금 부담금을 납입한 증빙서류 사본 1 부.
  - 6. 사업비 입금통장 사본 1 부.
  - 7. 사용인감 및 입금계좌신고서 원본 1 부.
  - 8. 인감증명서 원본 1 부.

